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송명화 의원 외 12명
- 나. 의안번호: 제1904호
- 다. 발의일자: 2020. 10. 14.
- 라. 회부일자: 2020. 10. 26.

2. 제 안 사 유

-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적용대상을 확대하고,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과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충전시설의 충전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상위법을 반영하여 정의와 적용 범위 등을 수정함(안 제2조).
- 나.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예외 대상을 축소함(안 제4조제3항).

- 다.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인프라를 설치·운영하는 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(안 제7조제5항).
- 라. 서울특별시 소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(안 제8조).
- 마. 충전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(안 제9조).
- 바. 상위 법령 등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용어를 삭제함.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적용대상을 확대하고,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전시설 설치·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과 서울시에서 관리·운영하는 충전시설의 충전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안 제2조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충전시설, 수소전기자동차,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정의를 신설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- 안 제4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구매 예외규정인 “해당 연도의 신규 구매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”를 삭제하여 의무구매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, 이를 통해 향후 신규 구매 자동차는 전량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될 수 있을 것임.
- 안 제7조제5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, 이는 최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충전인프라 구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시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,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- 안 제8조는 충전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한국전력공사 충전 전력요금 할인특례 제도¹⁾ 폐지에 따라 충전시설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

1) 시 소유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무료 개방 중

인상됨에 따른 것이며, 충전요금 부과에 따라 결제시스템 구축 및 시민 홍보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임.

- 안 9조는 충전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전료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<한국전력공사 충전 전력요금 할인특례 제도 폐지에 따른 할인을 축소 추이>

구 분		현 행	개 정		
적용기간		'17.1.~'20.6.	'20.7.~'21.6.	'21.7.~'22.6	'22.7.~
할인율	기본요금	100%	50%	25%	0%
	전력량요금	50%	30%	10%	0%